

「예술인 복지법」 개정 안내

‘20. 6. 9. 사회적가치추진단

□ 「예술인 복지법」 개정내용

○ 서면계약 체결의무

-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반 시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[참고]

- 「예술인 복지법」 적용대상인 문화예술분야(법 제2조제1호)
 - 문학, 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, 출판, 만화
- 문화예술용역 정의(법제2조제3호)
 -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용역

○ 계약서 보존의무

- 문화예술기획업자등*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*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·제작·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□ 기타사항

- 법 개정내용은 6.4부터 시행되므로 향후 계약관련 업무에 주의 필요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상기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·상담창구 운영

□ 협조 요청사항

- 회원(사)에 대하여 위 개정내용 홍보 및 안내

제4조의4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)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,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.

1. 계약 금액
2. 계약 기간 · 갱신 ·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
3.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
4. 업무 · 과업의 내용,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
5.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
6.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

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,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,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[본조신설 2016. 2. 3.]

[제4조의3에서 이동 <2019. 12. 3.>]

제5조의2(계약서의 보존)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3. 12. 30., 2016. 2. 3., 2019. 12. 3.>

1. (생략)

1의2.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

1의3.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

1의4.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

2.~4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[제17조에서 이동 <2018. 4. 17.>]